

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
품격있고 살기좋은 양산을 만든다

양 산 공 공 폐 수 처 리 시 설

폐수처리슬러지 처리용역 과업지시서



양산시시설관리공단

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슬러지 위탁처리 용역

2. 목적

본 과업은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, 안정적인 폐수처리 운영 및 슬러지를 처리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3. 용어의 정의

- 3.1 “발주자”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(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)을 말한다
- 3.2 계약상대자”라 함은 본 과업의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된 계약서 상의 개인,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.
- 3.3 폐기물관리법 제18조(사업장폐기물의 처리) 및 같은 법 제45조(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)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(<http://www.allbaro.or.kr>)으로 작성하는 폐기물 인계·인수서를 “전자인계서”라 한다.

4. 용역개요

- 4.1 위치 :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111(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)
- 4.2 용역기간 : 2026년 5월 1일 ~ 2026년 8월 31일(4개월 정도)
※. 단, 착수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음.
- 4.3 용역연장 :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조정 될 수 있다.
계약 연장 시 동일한 계약단가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한다.
- 4.4 용역범위
가. 발주처에 발생하는 **유기성 폐수처리슬러지** 최종처리 및 재활용에 한함

나 본 용역에서 운반은 제외

※ 폐수처리슬러지 운반은 발주자가 정한 운반업체로 한다.

4.5 예상발생량 : 총 600톤/년도 정도

가. 예상발생량은 추정물량으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
나.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찌꺼기의 성상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농축조에서 농축한 후 탈수한 함수율 평균 80±5% 내외의 폐수찌꺼기(그 밖의 폐수처리슬러지:51-01-08)이다.

다. 슬러지는 계절별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, 계약 상대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
5. 자격기준(법적기준)

5.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.

5.2 처리업체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(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) 재활용업(지정폐기물 외 폐기물)의 허가를 득하고,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[유기성오니(폐수처리오니)]로 등록한 업체로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[별표5]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

5.3 **처리업체는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일 처리용량이 대표사가 25톤 이상이어야 하며, 주 2~3일 이상 연속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.**

5.4 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
6. 계량 및 처리량 산출

- 6.1 계약 상대방은 매 차량 반출시 **공인 계량 증명소**에서 폐기물을 계량하여야 하며, 계근 후 출력되는 계근표는 각 처리장에 전달하여야 하며 처리위탁 비용은 계량증명서에 기록된 실중량으로 계산한다
- 6.2 폐수슬러지 반출량 계량단위는 킬로그램(kg)으로 산출하고 월 누계 정산시 톤(ton) 단위로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한다.

7. 전자인계서 작성

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반 및 처리에 관한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올바로시스템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8. 대금지급

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대금지급은 1개월 처리량을 매회 차 이행 분으로 하여 **당월 말일기준으로** 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**월 1회 정산 지급한다.** 단, 계약상대자는 공인계량기관의 계량증명서 1부를 감독원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를 제출하고 그 부분을 대금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9. 준수사항

- 9.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- 9.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처리요청 후 24시간내 처리하여야 한다.
- 9.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되는 설비로 **평일은 물론 휴일 및 공휴일, 야간에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**
- 9.4 반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및 안전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.
- 9.5 계약상대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[별표8]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

아니된다.

- 9.6 계약상대자는 휴업, 폐업,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한 폐수처리슬러지 미처리 시에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.
- 9.7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처리 요구하는 물량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,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만약 위탁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9.8 계약이행 중 쌍방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견이 상이할 시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의견에 따른다.
- 9.9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·허가 사항은 수탁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.

10. 계약해지

- 10.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환경오염, 민원야기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폐기물 위탁처리를 제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0.2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가 정지, 취소, 행정처분 등 정상적인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0.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장기 누적시키거나 부당한 계량행위 또는 과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2회 이상 처리가 지연되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10.4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진다.
- 10.5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당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

기타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0.6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이나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진다.

11. 안전관리

11.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1.2 계약상대자는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1.3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, 본 용역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11.4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,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
11.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1.6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, 그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.

11.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11.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,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·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11.9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신속히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, 발주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11.10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.

12. 사후관리

발주자는 발주자의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3. 기타사항

13.1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과 법령, 조례, 규칙 및 과업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3.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회계예규, 일반 판례, 지침 등에 따른다.

13.3 과업 수행 과정의 처리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,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.

13.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본 용역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처리규정에 맞게 슬러지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처벌 및 행정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13.5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
13.6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.

13.7 발주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만약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부담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.

13.8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및 소속 직원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.

13.9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폐기물 처리의 적정 여부를 현장 확인

할 수 있으며, 계약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